

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http://www.seo.incheon.kr/>

선	기관위원장
람	

제1373호 2018. 7. 23(월)

차 례

고 시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94호 제3종시설물의 지정 고시 ----- 1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96호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도로)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7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97호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도로)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8

공 고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051호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9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052호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5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053호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21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069호 인천광역시 서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29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074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42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8-94호

제3종시설물의 지정 고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8. 7. 23.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대상 시설물			지정(해제) 사유	안전점검·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비고
시설물 명칭	소재지	관리주체			
검단출장소	인천광역시 서구 탁옥로 39	검단출장소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1,000㎡이상의 공공청사	<p>매년 2월 15일까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후, 상/하반기 정기점검 실시</p> <p>* 신규 지정·고시된 제3종 시설물은 2018년 시설물관리계획 제출 및 2018년 상반기 정기 안전점검 비대상입니다.</p> <p>※ 제3종 시설물 지정·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설물관리대장과 설계도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p>	
서구보건소	인천광역시 서구 탁옥로 39	서구보건소 (서구시설관 리공단)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1,000㎡이상의 공공청사	<p>매년 2월 15일까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후, 상/하반기 정기점검 실시</p> <p>* 신규 지정·고시된 제3종 시설물은 2018년 시설물관리계획 제출 및 2018년 상반기 정기 안전점검 비대상입니다.</p> <p>※ 제3종 시설물 지정·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설물관리대장과 설계도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p>	

대상 시설물			지정(해제) 사유	안전점검·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비고
시설물 명칭	소재지	관리주체			
석남보도육교	인천광역시 서구 가남로 319 일원	건설과	설치된 지 10년 이상 경과된 보도육교	<p>매년 2월 15일까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후, 상/하반기 정기점검 실시</p> <p>* 신규 지정·고시된 제3종 시설물은 2018년 시설물관리계획 제출 및 2018년 상반기 정기 안전점검 비대상입니다.</p> <p>※ 제3종 시설물 지정·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설물관리대장과 설계도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p>	
노인복지회관	인천광역시 서구 신석로121번길 10	노인복지과 (서구시설관 리공단)	<p>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500㎡ 이상 ~ 1,000㎡ 미만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및 집회장, 종교시설, 운동시설</p>	<p>매년 2월 15일까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후, 상/하반기 정기점검 실시</p> <p>* 신규 지정·고시된 제3종 시설물은 2018년 시설물관리계획 제출 및 2018년 상반기 정기 안전점검 비대상입니다.</p> <p>※ 제3종 시설물 지정·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설물관리대장과 설계도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p>	
완정교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713-36 일원	건설과	<p>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교량으로 - 「도로법」상 도로교량 연장 20m 이상 ~ 100m 미만 교량</p>	<p>매년 2월 15일까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후, 상/하반기 정기점검 실시</p> <p>* 신규 지정·고시된 제3종 시설물은 2018년 시설물관리계획 제출 및 2018년 상반기 정기 안전점검 비대상입니다.</p> <p>※ 제3종 시설물 지정·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설물관리대장과 설계도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p>	

대상 시설물			지정(해제) 사유	안전점검·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비고
시설물 명칭	소재지	관리주체			
콜롬비아 보도육교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529 일원	건설과	설치된 지 10년 이상 경과된 보도육교	<p>매년 2월 15일까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후, 상/하반기 정기점검 실시</p> <p>* 신규 지정·고시된 제3종 시설물은 2018년 시설물관리계획 제출 및 2018년 상반기 정기 안전점검 비대상입니다.</p> <p>※ 제3종 시설물 지정·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설물관리대장과 설계도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p>	
네개동 보도육교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537 일원	건설과	설치된 지 10년 이상 경과된 보도육교	<p>매년 2월 15일까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후, 상/하반기 정기점검 실시</p> <p>* 신규 지정·고시된 제3종 시설물은 2018년 시설물관리계획 제출 및 2018년 상반기 정기 안전점검 비대상입니다.</p> <p>※ 제3종 시설물 지정·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설물관리대장과 설계도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p>	
서인천IC 보도육교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548 일원	건설과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1,000㎡ 이상의 공공청사	<p>매년 2월 15일까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후, 상/하반기 정기점검 실시</p> <p>* 신규 지정·고시된 제3종 시설물은 2018년 시설물관리계획 제출 및 2018년 상반기 정기 안전점검 비대상입니다.</p> <p>※ 제3종 시설물 지정·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설물관리대장과 설계도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p>	

대상 시설물			지정(해제) 사유	안전점검·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비고
시설물 명칭	소재지	관리주체			
가좌보도육교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206번지 일원	건설과	설치된 지 10년 이상 경과된 보도육교	<p>매년 2월 15일까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후, 상/하반기 정기점검 실시</p> <p>* 신규 지정·고시된 제3종 시설물은 2018년 시설물관리계획 제출 및 2018년 상반기 정기 안전점검 비대상입니다.</p> <p>※ 제3종 시설물 지정·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설물관리대장과 설계도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p>	
백석보도육교	인천광역시 서구 백석동 28-3 일원	건설과	설치된 지 10년 이상 경과된 보도육교	<p>매년 2월 15일까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후, 상/하반기 정기점검 실시</p> <p>* 신규 지정·고시된 제3종 시설물은 2018년 시설물관리계획 제출 및 2018년 상반기 정기 안전점검 비대상입니다.</p> <p>※ 제3종 시설물 지정·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설물관리대장과 설계도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p>	
건지보도육교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217 일원	건설과	설치된 지 10년 이상 경과된 보도육교	<p>매년 2월 15일까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후, 상/하반기 정기점검 실시</p> <p>* 신규 지정·고시된 제3종 시설물은 2018년 시설물관리계획 제출 및 2018년 상반기 정기 안전점검 비대상입니다.</p> <p>※ 제3종 시설물 지정·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설물관리대장과 설계도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p>	

대상 시설물			지정(해제) 사유	안전점검·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비고
시설물 명칭	소재지	관리주체			
거북시장 보도육교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557 일원	건설과	설치된 지 10년 이상 경과된 보도육교	<p>매년 2월 15일까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후, 상/하반기 정기점검 실시</p> <p>* 신규 지정·고시된 제3종 시설물은 2018년 시설물관리계획 제출 및 2018년 상반기 정기 안전점검 비대상입니다.</p> <p>※ 제3종 시설물 지정·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설물관리대장과 설계도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p>	
원적산터널 보도육교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522-18 일원	건설과	설치된 지 10년 이상 경과된 보도육교	<p>매년 2월 15일까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후, 상/하반기 정기점검 실시</p> <p>* 신규 지정·고시된 제3종 시설물은 2018년 시설물관리계획 제출 및 2018년 상반기 정기 안전점검 비대상입니다.</p> <p>※ 제3종 시설물 지정·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설물관리대장과 설계도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p>	
문화회관 보도육교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430 일원	건설과	설치된 지 10년 이상 경과된 보도육교	<p>매년 2월 15일까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후, 상/하반기 정기점검 실시</p> <p>* 신규 지정·고시된 제3종 시설물은 2018년 시설물관리계획 제출 및 2018년 상반기 정기 안전점검 비대상입니다.</p> <p>※ 제3종 시설물 지정·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설물관리대장과 설계도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p>	

대상 시설물			지정(해제) 사유	안전점검·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비고
시설물 명칭	소재지	관리주체			
광명교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361-2 일원	건설과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교량으로 - 「도로법」상 도로교량 연장 20m 이상 ~ 100m 미만 교량	매년 2월 15일까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후, 상/하반기 정기점검 실시 * 신규 지정·고시된 제3종 시설물은 2018년 시설물관리계획 제출 및 2018년 상반기 정기 안전점검 비대상입니다. ※ 제3종 시설물 지정·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설물관리대장과 설계도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한신빌리지 보도육교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546 일원	건설과	설치된 지 10년 이상 경과된 보도육교	매년 2월 15일까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후, 상/하반기 정기점검 실시 * 신규 지정·고시된 제3종 시설물은 2018년 시설물관리계획 제출 및 2018년 상반기 정기 안전점검 비대상입니다. ※ 제3종 시설물 지정·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설물관리대장과 설계도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빈정교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383-2 일원	건설과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교량으로 - 「도로법」상 도로교량 연장 20m 이상 ~ 100m 미만 교량	매년 2월 15일까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후, 상/하반기 정기점검 실시 * 신규 지정·고시된 제3종 시설물은 2018년 시설물관리계획 제출 및 2018년 상반기 정기 안전점검 비대상입니다. ※ 제3종 시설물 지정·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설물관리대장과 설계도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인천광역시서구청시 제2018-96호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도로)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서구청 도시개발과(☎ 560-476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8. 7. 23.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결정(변경)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2. 위 치 : 서구 검암동 69-9번지 일원
3. 면적 또는 규모
 - 도로결정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신설	소로	1	31	10	국지도로	430	소로1-30	시천동 37-3번지	일반 도로	-	-	

- 도로결정 사유서

도로명	결정 내용	결정 사유
소로 1-31호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 신설 - 연장 : 430m - 폭원 : 10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구와 계양구간 원활한 소통을 위해 이면도로 개설이 필요하나, 양 구청간 협의기간 소요 및 과도한 공사비로 인해 우선 마을안길 조성을 통해 주민편의를 제공하고자 노선 신설

4. 지형도면 : 게재생략(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http://luris.mltm.go.kr/> 열람 가능)

인천광역시서구청시 제2018-97호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도로)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서구청 도시개발과(☎ 560-476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8. 7. 23.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결정(변경)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2. 위 치 : 서구 대곡동 일원(마전지구 ~ 삼라마이더스 아파트)
3. 면적 또는 규모

○ 도로결정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신설	소로	1	311	10 (10~22)	국지도로	340	중2-190 (마전지구계)	대곡동 산199-3	일반 도로	-	-	

○ 도로결정 사유서

도로명	결정 내용	결정 사유
소로 1-311호선	○ 도로 신설 - 연장 : 340m - 폭원 : 10m(10~22m)	○ 현황도로인 대곡로 일원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을 통해 도로 폭원을 확장하여 어린이 등 보행자 안전 및 주민편익을 도모코자 노선 신설

4. 지형도면 : 게재생략(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http://luris.mltm.go.kr/> 열람 가능)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8-1051호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2018. 7. 23.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개정이유

- 존속기한 연장 : 지방재정법 개정(2014.05.28.)으로 존속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특별회계의 경우 2018.12.31.부로 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특별회계 계속 운영을 위한 조례개정

2. 주요내용

-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5조의2(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로 하되, 「지방재정법」 제9조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참조 : 자원순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404-701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삼곡동) / ☎ 032-560-4552, FAX 032-560-2760]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4. 참고사항

- 개 정 안 : “별지 참조”
- 신·구조문대비표 : “별지참조”
- 예 산 수 반 사 항 : “해당 없음”
- 관계 법령 발췌 : “별지 참조”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지방재정법 개정(2014.05.28.)으로 존속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특별회계의 경우 2018.12.31.부로 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특별회계 계속 운영을 위한 조례개정 (존속기한 연장)

2. 주요내용

-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5조의2(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로 하되, 「지방재정법」 제9조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3. 참고사항

- 가. 개 정 안 : “별지 참조”
- 나. 신·구조문대비표 : “별지 참조”
- 다. 예 산 수 반 사 항 : 해당사항 없음 또는 “별지 참조”
- 라. 관계 법령 발췌 : “별지 참조”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로 하되, 「지방재정법」 제9조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5조의2(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로 하되, 「지방재정법」 제9조4항 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u>

관계법령 참고자료

□ 「지방재정법 제9조 제3항 및 제4항 및 부칙 제4조 제2항」

제9조(회계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목적세에 따른 세입·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5.28.>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5.28.>

[전문개정 2011.8.4.]

부칙 <제12687호, 2014.5.28.>

제4조(특별회계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6회계연도 예산안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의 특별회계로서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존속기한을 정하여야 하는 특별회계 중 해당 조례에 별도로 존속기한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특별회계 및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을 초과하여 정하여진 특별회계는 2018년 12월 31일을 그 존속기한으로 본다.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제8항」

제6조(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나 택지(宅地)를 개발하려는 자는 그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내야 한다. <개정 2013.8.13., 2015.2.3.>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받은 금액을 해당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3.>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그 금액을 징수한다. <개정 2013.8.13.>

④ 제1항에 따른 납부금액의 산정방법, 납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7.]

제4조(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⑧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납부받은 금액으로 조성된 재원(財源)을 별도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3.30., 2014.2.11.>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8-1052호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2018. 7. 23.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개정이유

-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존속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특별회계의 경우 2018. 12. 31부로 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조례 개정을 통해 주차장특별회계의 지속적인 운영과 2019년 예산편성의 원활한 도모
-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표현 정비

2. 주요내용

- 주차장 특별회계 존속기한 표시 신설
이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로 하되,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 8. 13.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 주차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22726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심곡동) ☎ 032-560-4852 / FAX 032-560-2791]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4.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존속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특별회계의 경우 2018. 12. 31부로 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조례 개정을 통해 주차장 특별회계의 지속적인 운영과 2019년 예산편성의 원활한 도모
-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표현 정비

2. 주요내용

- 주차장 특별회계 존속기한 표시 신설
 - 이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로 하되,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3. 참고사항

- 가. 개정안 : “별지 참조”
- 나. 신·구조문 대비표 : “별지 참조”
- 다. 예산수반사항 : “해당 없음”
- 라. 관계 법령 발췌 : “별지 참조”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주차장 특별회계”를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 특별회계”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회계”를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 회계”를 “특별회계”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회계”를 “특별회계”로 한다.

제5조 중 “회계”를 “특별회계”로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로 하되,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 중 “회계의 운영”을 “특별회계의 운영”으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및 「도로교통법」에 따른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u>주차장 특별회계</u>를 설치하고 회계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세입) <u>회계</u>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p> <p>1. ~ 9. (생략)</p> <p>제3조(세출) <u>이 회계</u>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p> <p>1. ~ 4. (생략)</p> <p>제4조(일시차입) ① <u>회계</u>의 운영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다.</p> <p>② (생략)</p> <p>제5조(잉여금의 처리) <u>회계</u>의 결산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월한다.</p> <p><u><신 설></u></p>	<p>제1조(목적) ----- ----- ----- -- <u>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 특별회계</u>----- ----- -.</p> <p>제2조(세입) <u>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u>--.</p> <p>1. ~ 9. (현행과 같음)</p> <p>제3조(세출) <u>특별회계</u>----- ----- -----.</p> <p>1. ~ 4. (현행과 같음)</p> <p>제4조(일시차입) ① <u>특별회계</u>--- -----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5조(잉여금의 처리) <u>특별회계</u>-- ----- -----.</p> <p><u>제5조의2(존속기한) 특별회계의</u></p>

<p>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u>회계의 운영</u>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u>의한</u> <u>다.</u></p>	<p><u>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로</u> <u>하되, 「지방재정법」 제9조제4</u> <u>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u> <u>수 있다.</u></p> <p>제6조(준용) ----- ---- <u>특별회계의 운영</u>----- ----- <u>따른</u> <u>다.</u></p>
--	--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8-1053호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2018. 7. 23.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개정이유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조항이 시·구별로 다르게 운영되고 있어 이용객들의 혼란 및 불편을 야기하는 바, 이를 일치시켜 공영주차장 이용객들의 이용 활성화 및 이용객의 편의 도모하고자 함.
- 환경친화적 자동차 중 전기자동차의 충전을 위한 주차시 감면조항을 추가하여 대기환경 개선 기여 및 임산부 탑승차량에 대한 감면조항을 추가하여 출산 장려 정책에 기여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시장 이용객 주차요금 면제시간 확대

2. 주요내용

- 전기자동차가 충전을 위하여 주차하는 경우 최초 1시간의 주차요금 면제
-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등록 거주자로서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이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발행한 산모수첩 등 증명자료를 제시한 경우 100퍼센트 감면

- 전통시장을 이용한 고객이 시장주차장을 이용한 경우(전통시장에서 발급한 주차권을 소지한 경우에 한함) 1시간 면제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 8. 13.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 주차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22726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심곡동) ☎ 032-560-4852 / FAX 032-560-2791]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4.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조항이 시·구별로 다르게 운영되고 있어 이용객들의 혼란 및 불편을 야기하는 바, 이를 일치시켜 공영주차장 이용객들의 이용 활성화 및 이용객의 편의 도모하고자 함.
- 환경친화적 자동차 중 전기자동차의 충전을 위한 주차시 감면조항을 추가하여 대기환경 개선 기여 및 임산부 탑승차량에 대한 감면조항을 추가하여 출산 장려 정책에 기여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시장 이용객 주차요금 면제시간 확대

2. 주요내용

- 전기자동차가 충전을 위하여 주차하는 경우 최초 1시간의 주차요금 면제
-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등록 거주자로서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이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발행한 산모수첩 등 증명자료를 제시한 경우 100퍼센트 감면
- 전통시장을 이용한 고객이 시장주차장을 이용한 경우(전통시장에서 발급한 주차권을 소지한 경우에 한함) 1시간 면제

3. 참고사항

가. 개정안 : “별지 참조”

나. 신·구조문 대비표 : “별지 참조”

다. 예산수반사항 : “해당 없음”

라. 관계 법령 발췌 : “별지 참조”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 50 퍼센트 감면. 다만, 나목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전기자동차가 충전을 위하여 주차하는 경우에는 최초 1시간의 주차요금은 면제한다.

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로서, 같은 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저공해자동차 등의 표지를 부착한 차량

나.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 친화적 자동차

제5조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및 제19조에 따른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전통시장을 이용한 고객이 시장주차장을 이용한 경우(전통시장에서 발급한 주차권을 소지한 경우에 한함) : 최초부터 1시간까지 면제

제5조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등록 거주자로서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부가 탑승한 차량이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발행한 산모수첩 등 증명자료를 제시한 경우 : 100퍼센트 감면
제17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p>8. ~ 9.(생 략)</p> <p>10. 「<u>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u>」 제2조 및 제19조에 따른 <u>전통시장 활성화</u>를 위하여 <u>전통시장을 이용한 고객</u>이 <u>시장주차장을 이용한 경우</u>(<u>전통시장에서 발급한 주차권을 소지한 경우에 한함.</u>) : <u>최초부터 30분까지 면제</u></p> <p>11. (생 략) <u><신 설></u></p> <p>제17조의2(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생 략)</p> <p>② ~ ④ 삭 제</p>	<p><u>나.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 친화적 자동차</u></p> <p>8. ~9.(현행과 같음)</p> <p>10. ----- ----- ----- ----- ----- ----- ----- -----</p> <p><u>최초부터 1시간까지 면제</u></p> <p>11. (현행과 같음)</p> <p>12. <u>인천광역시 서구 주민등록 거주자로서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부가 탑승한 차량이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발행한 산모수첩 등 증명자료를 제시한 경우 : 100퍼센트 감면</u></p> <p>제17조의2(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p>
---	---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8-1069호

인천광역시 서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을 지역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 7. 23.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개정이유

-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서구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관련된 유통에 관한 분쟁 조정으로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주민의 권리와 책무”에 관한 사항 추가 【안 제3조의2】
- “인천광역시서구유통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등 규정을 신설
【안 제17조~제19조】 - 상위법령 반영

3. 의견제출

-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1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경제에너지과, 전화 032-560-4432, Fax 032-560-273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4.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 서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하여 인천광역시서구유통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등의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주민의 권리와 책무”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3조의2)
- “인천광역시서구유통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등 규정을 신설
【안 제17조~제19조】 - 상위법령 반영

3. 참고사항

- 가. 개 정 안 : “별지 참조”
- 나.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 없음”
- 다. 예 산 수 반 사 항 : “해당 없음”
- 라. 관계 법령 발취 : “별지 참조”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2018- 호

인천광역시 서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주민의 권리와 책무) ① 주민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 속에서 소비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주민은 건전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를 향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구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제1항제2호 중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 다음에 “제5장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을 삽입한다.

제17조 및 제18조를 각각 제20조 및 제21조로 하고,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유통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등) ① 구청장은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에 따라 유통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나. 대한상공회의소의 임원 또는 직원

다. 소비자단체의 대표

라. 유통산업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마. 구에 거주하는 소비자

2. 도·소매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유통업무담당으로 한다.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

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위원이 6개월 이상 장기출타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8조(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이 해당 분쟁당사자(대리인인 경우 포함)이거나 해당 안건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조정한다.

1.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인근 지역의 도·소매업자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사항은 제외한다.
2.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중소기업체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사항.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사항은 제외한다.

3.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인근 지역의 주민 사이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 제19조(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위원회 운영 또는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중소벤처기업부가”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로 한다.

<신 설>구성·운영제17조(유통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등) ① 구청장은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에 따라 유통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나. 대한상공회의소의 임원 또는 직원

다. 소비자단체의 대표

라. 유통산업 분야에 관한 학

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마. 구에 거주하는 소비자

2. 도·소매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구청

장이 지명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
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유통업무담당으로 한다.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
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
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
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위원이 6개월 이상 장기출타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

<신 설>

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8조(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이 해당 분쟁당사자(대리인인 경우 포함)이거나 해당 안건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조정한다.

1.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인근 지역의 도·소매업자 사이의

<신 설>

제17조 · 제18조 (생략)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사항은 제외한다.

2.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중소기업체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사항.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사항은 제외한다.

3.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인근 지역의 주민 사이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

제19조(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위원회 운영 또는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 · 제21조 (현행 제17조 및 제18조와 같음)

관계법령 발취

□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

제36조(유통분쟁조정위원회) ① 유통에 관한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구에 각각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5.7.24., 2017.10.31.>

1.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인근 지역의 도매업자·소매업자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사항은 제외한다.
 2.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중소기업체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사항.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사항은 제외한다.
 3.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인근 지역의 주민 사이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
 4. 제1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 수행과 관련한 분쟁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는 사람
 - 가.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 나. 대한상공회의소의 임원 또는 직원
 - 다. 소비자단체의 대표
 - 라. 유통산업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마.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소비자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매업·소매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⑥ 제1항 각 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등, 영업활동 및 생활환경의 범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8-1074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지하수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2018. 7. 23.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개정이유

-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존속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특별회계의 경우 2018.12.31.부로 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조례 개정을 통해 지하수 관리의 지속적인 운영과 2019년 예산편성의 원활한 도모

2. 주요내용

- 지하수 관리 특별회계 존속기한 신설(제10조의2)
 - 제10조의2(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로 하되,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 적용 조문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 건설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404-701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심곡동) / ☎ 032-560-4533, FAX 032-560-2764]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4. 참고사항

- 개 정 안 : “별지 참조”
- 신·구조문대비표 : “별지참조”
- 예 산 수 반 사 항 : “해당사항 없음”
- 관계 법령 발췌 : “별지 참조”

인천광역시 서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존속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특별회계의 경우 2018. 12. 31부로 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조례 개정을 통해 지하수 관리의 지속적인 운영과 2019년 예산편성의 원활한 도모

2. 주요내용

- 지하수 관리 특별회계 존속기한 신설(안 제10조의2)
-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 적용 조문 정비

3. 참고사항

- 가. 개 정 안 : “별지 참조”
- 나. 신·구조문대비표 : “별지 참조”
- 다. 예 산 수 반 사 항 : 해당사항 없음 또는 “별지 참조”
- 라. 관계 법령 발췌 : “별지 참조”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로 하되,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의2제1항제1호 중 “징수관 :”을 “징수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분임징수관 :”을 “분임징수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재무관 :”을 “재무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분임재무관 :”을 “분임재무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채권관리관 :”을 “채권관리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채무관리관 :”을 “채무관리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지출원 :”을 “지출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수입금출납원 :”을 “수입금출납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현금출납원 :”을 “현금출납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물품출납원 :”을 “물품출납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신 설></u></p> <p>제11조의2(회계관계공무원의 관 직지정) ① 특별회계의 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 관계 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징수관</u> : 총무국장 2. <u>분임징수관</u> : 건설과장 3. <u>재무관</u> : 총무국장 4. <u>분임재무관</u> : 건설과장 5. <u>채권관리관</u> : 건설과장 6. <u>채무관리관</u> : 건설과장 7. <u>지출원</u> : 경리담당 8. <u>수입금출납원</u> : 세외수입 담 당 9. 세입·세출외 <u>현금출납원</u> : 경리업무 담당자 10. <u>물품출납원</u> : 재산관리담당 <p>② (생 략)</p>	<p><u>제10조의2(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로 하되, 「지방재정법」 제9조제4 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u></p> <p>제11조의2(회계관계공무원의 관 직지정) ① ----- -----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징수관</u>: ----- 2. <u>분임징수관</u>: ----- 3. <u>재무관</u>: ----- 4. <u>분임재무관</u>: ----- 5. <u>채권관리관</u>: ----- 6. <u>채무관리관</u>: ----- 7. <u>지출원</u>: ----- 8. <u>수입금출납원</u>: ----- - 9. ----- <u>현금출납원</u>: -- ----- 10. <u>물품출납원</u>: ----- <p>② (현행과 같음)</p>